

사용검사 확인증

사 용 검 사 구 분	주택건설사업([<input checked="" type="checkbox"/>]전체 [<input type="checkbox"/>]공구별 [<input type="checkbox"/>]동별) [<input type="checkbox"/>]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번호	2015-주택경관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호		
공구명/동 명칭	동탄2택지개발지구 C12블록 / 공동주택 101동~201동		
상 호	우미동탄제일차피에프브이(주) 우미건설(주)	등 록 번 호	전라남도-주택건설사업등 록업자-2004-003
대 표 자	김부열 이석준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131111-0395375 205211-0001385
영업소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81, 901호(정자동)		
대 지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469-12 (오산동, 동탄역 린 스트라우스)	대지 면적(㎡)	25,598
건축면적(㎡)	11,240.3034	건 폐 율(%)	43.91
연 면 적(㎡)	153,523.2932	용 적 률(%)	399.49
동 수(주/부)	5/4	세 대 수	617

※ 붙임 1 : 동별개요
 붙임 2 : 안내사항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2018년 9월 6일

화 성 시



[부임 2]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안내

- 우미동탄제일차피에프브이(주), 우미건설(주) -

1.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관리의 이관)제1항 규정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2. 공동주택 입주개시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지연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이 지연되어 미취학 아동을 보육하는 입주자는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동안 인근의 타단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초의 관리규약 제안 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4조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 제8항 규정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지연될 경우에는 동 관리규약에 따라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 어린이집 관련 입주자 불편 민원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4. 조경·식재는 연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시어 하자발생을 최소화 하고 하자발생 시 적기 보식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5. 바닥분수가 설치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바닥분수 시설에 사용되는 수돗물이 이용자의 신체와 접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이」의 운영기준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15일 전까지 설치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주민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및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공고 바랍니다.
7. 동탄2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업소 1간판)에 따라 가로형 광고물(3층 이하에 설치)의 가로크기는 업소폭의 80%, 최대 8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크기는 70cm 이내, 돌출폭 벽면에서 30cm이내입니다. 돌출형 광고물(3층 이상 벽면에 표시)의 가로크기는 100cm 이내, 세로크기는 70cm이내입니다. 창문이용 광고물(흰색글자로 설치, 전기를 이용한 표시 금지)의 세로높이는 1층은 창문하단에서 1.3m 상단에 설치, 2층 이상은 창문 중앙에 설치, 3층 이하 20cm, 4층~6층 30cm, 7층 이상은 40cm이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부총장소 건축산업과 광고물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31-369-4244)
8.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C12블록 「린스트라우스」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위한 사전점검 결과, 초·중학교 학생배치에 이상없음을 알려드리며, 인근 공동주택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우려되므로 사업시행자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반드시 통학로를 확보하여 주시고, 등·하교시간

공사차량 운행 자제 및 공사소음·비산먼지 발생 등을 사전에 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명	초등학교 통학구역	중학교 학교군	비고
린스트라우스 (C-12블록)	청계초	동탄2-1중학군 (전체 6교 예정 중 동탄중, 청계중, 한백중, 다원중, 이산중 개교 완료)	

9. 사후관리(같은 법 제24조의2) 등 교통영향평가 이행 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시설물을 유지·관리·운영하시고, 교통안전시설물 인수인계 절차 등을 우리 시 동부 건설교통과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0.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4조에 따른 미술작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6.

화 성 시

